



2025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

기업용

본 현장실습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제작되었음.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세부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제7조(현장실습),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CONTENTS

I.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1.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	2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1. 현장실습 기업의 의미	8
2. 참여·선도기업 선정 절차	9
3. 사전 현장실사	10
4.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11
5.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33
6. 현장실습 운영	34
7.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전환	36
III. 현장실습 수당 및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1. 현장실습 수당 지급	38
2.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39
3.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41
IV. 현장실습생 교육과 관리	
1. 현장실습 권익 및 보호 지원	46
2. 안전사고 조치	52
[부록 1]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규	54
[부록 2] Q & A	60

서식 목차

번호	내용	페이지
서식 1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66
서식 2	현장실습표준협약서	67
서식 3	취업(전환) 동의서	71
서식 4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예시)	72
서식 5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예시)	73
서식 6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예시)	74
서식 7	현장실습 사안보고서	75
서식 8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76



I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1.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



제1장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



●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 법률 제19344호)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1) 근로(조기취업) 중심에서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2018년)

- 현장실습 중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 계약(협약)만을 체결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 실습을 운영함.
- 현장실습은 '노동'이 아닌 '배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닌 '학생'임.
- 현장실습생은 학생이므로, 학교와 기업은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실습생의 권익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제1항 및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제2020-248호([부록 2] 참조)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참여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개선 사항]

구분	근로중심 현장실습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 연계	자율(근로중심)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기간	6개월 이내	최대 3개월(수업일수의 1/3 범위 이내)
운영 형태	조기 취업	취업 준비과정
프로그램	없음	학교·기업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기업현장교사	없음	기업현장교사 지정 및 지도 책임 부여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혼용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신분	학생, 근로자 혼용	학생
급여/수당	급여 지급	현장실습 수당 지급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근로기준법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근로기준법 등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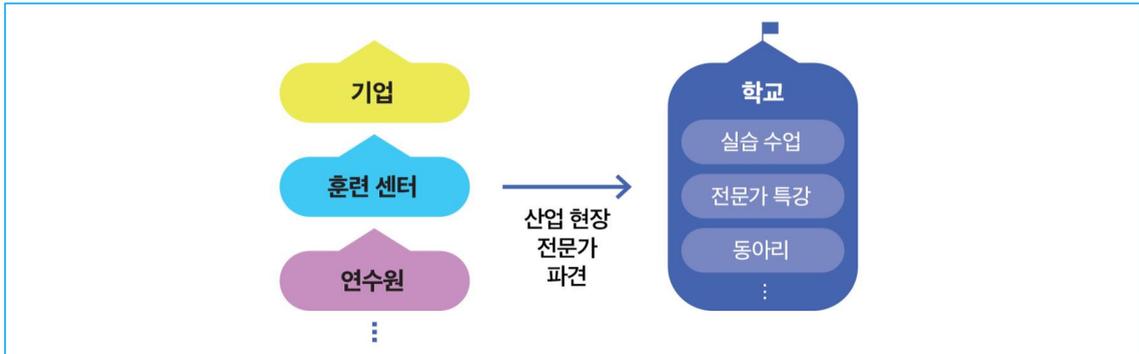
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형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함.
- 현장실습 교내 활동의 유형은 교내 현장실습, 교외 활동의 유형은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업 발굴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교내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은 학생의 선택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장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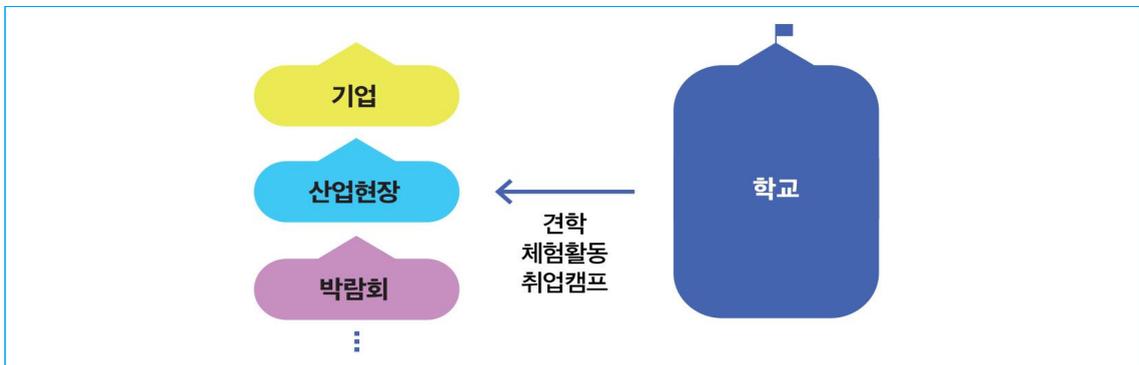
구분	유형	세부 활동 내용	실시시기
교내 활동	교내 현장실습	•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지도하는 현장실습	1~3학년
교외 활동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실습 ※ 공동실습소,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 교육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 ※ 공동실습소, 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전문대학 등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에서 직접 활동하는 현장실습	

1) 교내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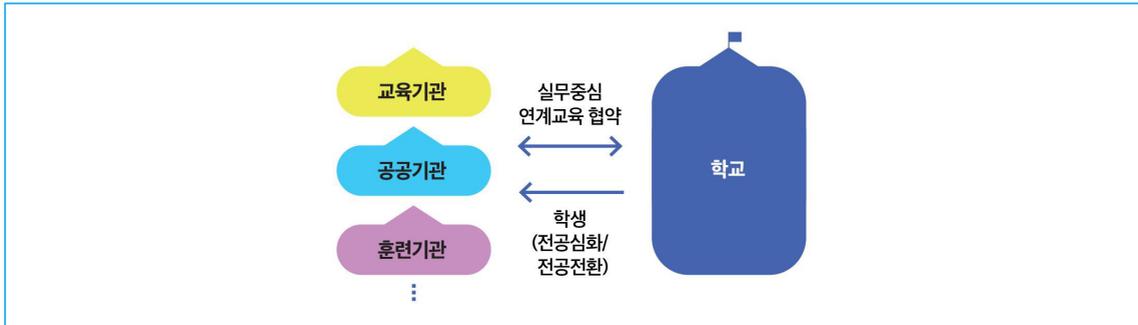
-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실습을 지도하는 유형임.
- 실제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 실습수업 중 일부를 집중 지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전문가 특강, 산업현장 전문가의 학생 동아리 지도 등이 해당 됨.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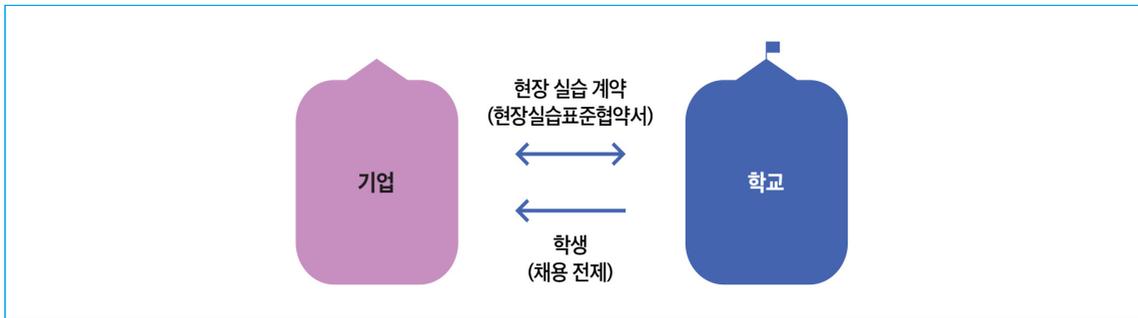
- 학생이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의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유형임.
- 산업현장 견학, 산업박람회 참여, 기업 연계 취업캠프 등이 해당함.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의 기간은 **연간 2주(10일)** 이내로 실시. 단, 상대적으로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시·도교육청 승인에 따라 2주 이상 실시 가능

3)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 교육기관, 공공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협회 등과 연계하여 실무중심의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임.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기관 예: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공동실습소, 기업 연수원 등
-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강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실무중심의 전공 심화 교육 또는 전공 전환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됨.

4)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유형임.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학생의 전공과 기업에서 교육받는 직무가 일치해야 함.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은 총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함.
 ※ 단, 학교가 설정한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월을 초과한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을 초과하여 현장실습 운영 가능
-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필요에 따라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 별도의 현장실습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 교육청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을 최대 1개월 운영 또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현장실습 참여 가능

- 현장실습은 사전 현장실사와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또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에서만 가능함.

구분	선도기업	참여기업
승인 주체	시·도교육청	학교
선정 절차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선도기업 신청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심의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



II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1. 현장실습 기업의 의미
2. 참여·선도기업 선정 절차
3. 사전 현장실사
4.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5.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6. 현장실습 운영
7.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전환



제1장

현장실습 기업의 의미

- 현장실습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춘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함.
-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 중 관할 시·도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도기업'이라 하며, 그 외 기업은 '참여기업'이라 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학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선도기업 선정의 적합성을 심의함.
-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심의된 기업을 참여기업과 선도기업(후보) 대상으로 분류, 결정함.
- 참여기업은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선도기업은 시·도교육청별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각각 최종 승인함.
-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청)로 현장실습을 의뢰할 수 있음. **서식 1**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비교]

구분	선도기업	참여기업
인정 주체	시·도교육청	학교
선정 절차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심의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심의
현장실습 운영 기간	1주(5일) ~ 3개월(60일) ※ 일수는 실습일을 기준으로 함.	
사전 현장실사	필수	
학생 순회지도	필수	
노무사 기업 코칭	필수	선택
취업 전환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단, 4주(실습일 기준 20일) 이상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후	3학년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시 졸업 가능(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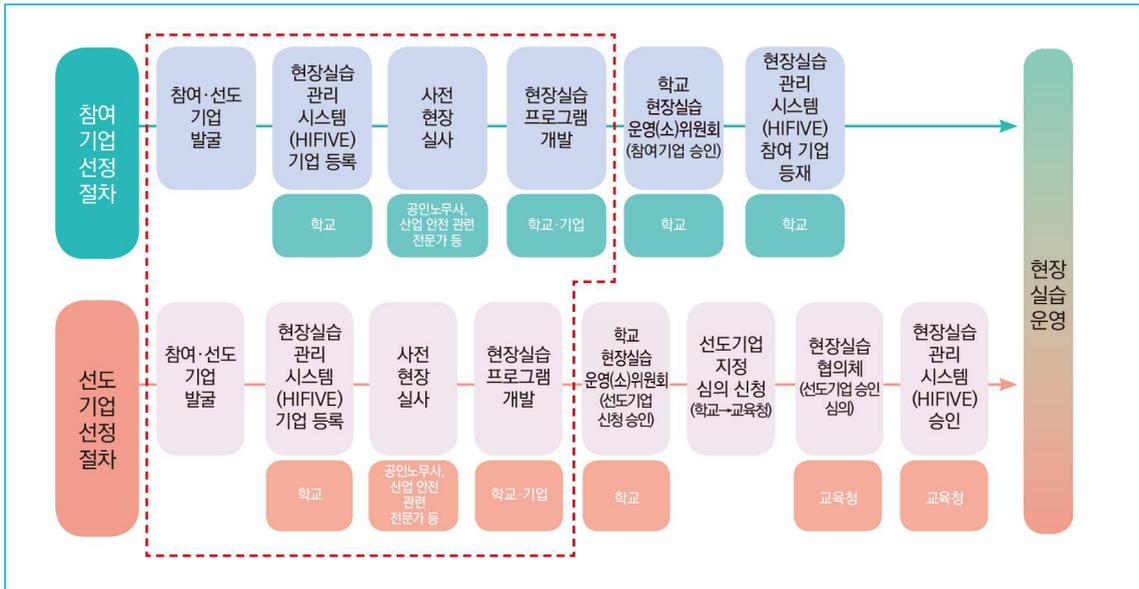
※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전에 선도기업으로 취업 전환하는 경우 4주(실습일 기준 20일) 이상 현장실습을 참여 후 취업전환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가능

제2장

참여·선도기업 선정 절차

-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승인은 기업정보 제공 및 기업 발굴,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 기업 등록 및 노무사 현장실사 요청, 사전현장 실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참여·선도기업 심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존 참여·선도기업 관리 순서로 진행됨.

자료 1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인정 절차



제3장

사전 현장실사

- 학교전담노무사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함.
- 학교전담노무사는 유해 위험 업종(건설, 기계, 전기, 화공 등)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원 등과 협조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는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참여·선도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함.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는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선도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함.
- 현장실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협조하여 실시 하며, 교사 동행 없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참여·선도 기업의 현장 실사 준비 사항

- 기업현장교사 지정
 -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은 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재 근로자 명부 준비,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준비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입문(의무)교육 자료 준비
- 기업소개서, 직무기술서 등 현장실습생 안내 자료 준비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 사전 현장실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선 사항을 현장실습에 적극 반영해야 함.



● 현장실습 기업선정 시 필수 구비서류

- ①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서 (참여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
- ②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 ④ 기업의 4대 보험 가입증명원
- ⑤ (필요시) 현장실습(채용) 의뢰서 **서식 1**

제4장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세부 운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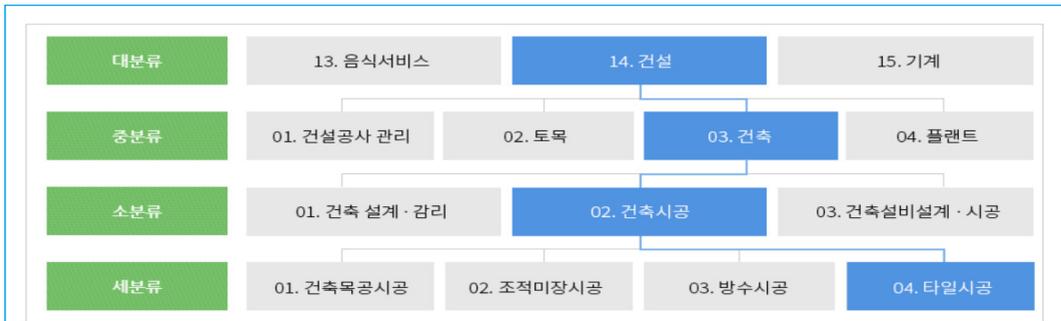
가. 현장실습 요구분석 실시

현장실습 요구 분석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주요 진출 분야 및 현장실습 필요 직무를 분석하고, 참여기업에서는 현장실습 지도 가능 직무 및 인적·물적 여건, 학습자 요구 등을 분석하는 단계임.

- 학교는 전문교과II와 관련된 교과내 내용을 분석하여 이 중 현장실습 필요 직무를 확인하고, 기업은 수행 직무와 현장실습 지도 가능 직무 및 내용을 확인함.
- 현장실습 요구 분석(학교용)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NCS 능력단위)에서 현장실습 필요 직무(NCS 능력단위)를 선택하여 작성함.
- 현장실습 요구 분석(기업용)에서 수행직무는 NCS 세분류 수준을, 현장실습 가능 직무는 세분류 내 NCS 능력 단위로 작성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운영 횟수, 운영 내용 등)을 기술함.
- 기업 분석의 시설 및 기자재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 중에 활용하는 주요 시설 및 기자재를 작성하고, 현장 실습 가능 직무에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 NCS 능력 단위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별도의 기업 특화된 직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함.

※ 직무기술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참고(www.ncs.go.kr)

※ 현장실습 가능 직무 선정 방법



NCS 분류 예시(건설 분야)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검색일: 2023.12.27). NCS 분류예시.

<https://www.ncs.go.kr/th01/TH-102-001-02.scdo>

→ NCS 분류를 토대로 현장실습 직무 검색: 1)기업의 주요업종 및 수행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선택 → 2)세분류별 세부 능력단위 확인 → 3)능력단위 중 현장실습 가능 직무 선정

나.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 학교와 기업은 현장실습 요구 분석을 토대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전공 교과 교사와 기업 담당자가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자료** 에 제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등을 추가하여 실습기간 중에 학습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함.
 - ※ 한국산업인력공단 특성화고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참고 'HIFIVE 홈페이지 → 현장실습 자료실 또는 교육자료실' 게시판 자료 참고
- 전문교과Ⅱ(기초과목, 실무과목)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내용을 개발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참고(www.ncs.go.kr)
- **실습직무 및 주제**는 직무기술서상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와 가장 유사한 NCS 세분류를 선정함.
- 현장실습 목표는 선정된 NCS 직무 분야의 세분류 개요를 참고하거나, 학교와 기업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서술함.
- 실습 내용은 직무분석 내용을 토대로 직무내용과 유사한 NCS 능력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습 내용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기업의 특화된 직무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개발함.
- 실습 유형은 크게 ① 입문교육, ② 실무교육(OJ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문교육 **시간**은 전체 실습시간 중 30% 이상으로 편성하고, 현장실습생에게 각 교육 내용별로 적절한 지도 방법과 시간을 설정함.
 - ① 입문교육: 현장실습 기업 및 업무소개, 의무교육, 직무기본교육(NCS, 기업특화) 등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적응지도 과정임.
 - ※ 입문교육 **시간**은 전체 실습 시간 중 30% 이상으로 편성하고,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2시간 이상 필수로 배정되어야 함.
 - ② 실무교육(OJT): 실무교육(OJT)은 70% 이내로 편성하며, 직무와 관련된 전문 내용으로 일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는 과정임.
- 실습 기간은 학교, 기업, 학생이 협의하여 학생의 성취 수준, 기업의 준비 정도,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대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까지 가능함.
 - ※ 단,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도 가능 **서식 8**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권장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하루 1시간 연장 가능함.
- 현장실습 평가서는 현장실습 중 학습한 내용에 대해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서식 6** 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평가 방법은 현장실습생이 실습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방법으로 전공 교사와 기업 담당자가 협의하여 작성함.
 - ※ 평가 방법 예시 : 포트폴리오, 문제 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시험, 시뮬레이션,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수행평가, 일지/저널, 작업장평가, 기타 등

자료 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 2회 수행 권고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④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사건·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또는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및 제29조 ② 매 반기마다 실시(연 2회) ③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일부 업종 제외)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6개월 이내 교육 실시 ⑥ 교육의무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최초 작업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이미 교육을 실시했어도 신입사원, 휴가자, 휴직자 복직 등 교육 재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기준법」 제93조 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 1회 이상(최소 1시간 이상) 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 포함) ④ 교육 실시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미준수 시 과태료 처분

자료 기업 의무교육 활용 자료

교육 내용	산업안전 보건교육	영상QR코드	 산업안전보건교육1	 산업안전보건교육2
			영상 ①	영상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영상QR코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2
			영상 ①	영상 ②
	작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영상QR코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3
		영상 ①	영상 ②	
	개인정보보호 교육	영상QR코드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2
			영상 ①	영상 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영상QR코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2
			영상 ①	영상 ②

다. 기업현장교사의 배치 및 역할

- 전공지식·기술을 현장에서 경험·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 내의 현장전문가를 아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함.
 - 기업현장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음(아래 자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훈련지도 유경험자
 - ②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국가기술훈련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 ④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무실(작업장) 내에서 교육과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하며, 특히 기계·전기·화공·건설 분야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직무인 경우에는 절대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장실습생 1명당 기업현장교사 1명 지정(1:1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업현장교사 1명이 현장실습생 여러 명을 지도할 수 있음.
- 특히 기계·전기·화공·건설 분야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끼임, 추락, 절단, 감전, 중량물 부딪힘 등)인 경우에는 절대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기업현장교사를 1:1로 배치해야 함.
-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무실(작업장) 내에서 교육과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하며, 현장실습생에게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절단·베임·찢림 등의 산재 예방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배치된 기업현장교사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시 다른 직원을 대체하여 배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1인 기업 등 직원 수가 적어 배치된 기업현장교사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시 현장실습생을 전담할 수 없는 기업은 현장실습 불가
 - ※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산정 시 동시 지도 최대 2명까지만 인정
 - ※ 기업현장교사에게 지급되는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의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의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업무처리 기준 참고

자료 공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주일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OO시 OO구 000로 1234		
	실습장	□□시 □□구 □□□□로 1234		
기업현장교사(직위)		확정 후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에 입력함.		
현장실습 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5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없음		
직무 분야		정보통신(20)		
실습직무 및 주제		무선통신망 구축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선통신망에 대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장애 방지책을 수립하고 조치할 수 있다.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실습 일정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13	
	NCS 능력 단위	무선통신망구축 유지보수 (2002020310_21v3)	1	21
	평가	실습 항목별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수시	
	총시간	35		
기업현장교사 지도 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 사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공업고등학교	010-0000-0000	김OO	
기업담당자	OO기업	010-0000-0000	박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 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정보통신	재학생 현황	00명
졸업 후 주요 진출분야	통신설비설치 및 수리원		
관련 교과목	정보통신	관련 NCS 능력 단위	• 무선통신망구축 유지보수 (2002020310_21v3)
현장실습 필요직무 (NCS 능력 단위)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무선통신망 구축 운용		

기업 분석			
기업명	00기업	대표자	박00
재직자 수	00명	연매출액	00원
주요 업종	통신업,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수행 직무	무선통신망 구축
현장실습 활용 주요 시설 및 기자재	측정 장비(오실로스코프, 파워미터, 디지털 멀티미터, 스펙트럼분석기, 신호발생기, 네트워크분석기), 감쇠기, 케이블, 무선통신시스템 시험 툴 프로그램, 안전 장비, 공구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운영 3년 동안 지속 • 실제 무선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하는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어, 무선통신망 구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 능력 단위 및 기업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능력 단위: 무선통신망 구축 장비 발주, 무선통신망 시험, 무선통신망 구축 운용지원,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준비,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5G 액세스 네트워크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 무선통신망에 대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장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기업 현장 견학 • 실습 일정 안내 	강의 / 견학	1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2	
NCS 능력단위	•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2002020310_21v3)	강의/실습	1	21
평가	• 과제수행(태도, 안전관리 포함) 과정 결과평가	작업장 평가 평가자 질문	수시	
교육 시간 합계			14	21
총 현장실습 시간			35	

* NCS 능력 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 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표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OO고등학교 OO과 O반 OO번					이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항에 ○표 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100		
현장실습 과제수행	무선통신망 유지 보수 계획 수립	10	9	8	7	6	/40			
	무선통신망 유지 보수	10	9	8	7	6				
	무선통신망 장애 방지 대책 수립	10	9	8	7	6				
	무선통신망 장비 장애 조치	10	9	8	7	6				
태도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30			
	협동심	10	9	8	7	6				
	사규 및 직장 예절 준수	10	9	8	7	6				
안전관리	안전관리 숙지	10	9	8	7	6	/30			
	안전 수칙 이행	10	9	8	7	6				
	장비 및 기구 정돈	10	9	8	7	6				
평가준거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100	
*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										
기간	2000 . . . ~ 2000 . . .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OO고등학교장 귀하

자료 상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1개월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실습장	□□시 □□구 □□□□로 1234		
기업현장교사(직위)		확정 후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에 입력함.		
현장실습 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20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2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지필고사)		
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02)		
실습직무 및 주제		사무행정, 회계·감사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고, 전표작성 및 증빙서류를 처리하고,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며, 결산예비절차와 각 계정을 정리하고 장부를 마감할 수 있다.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실습 일정 안내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15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작성(0202030201_22v3) 자료관리(0202030203_22v4) 전표관리(0203020101_20v4) 자금관리(0203020102_20v4) 결산처리(0203020104_23v5) 	25	85
	기업특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ERP 그룹웨어 활용 	5	10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 항목별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수시	
	총시간	140		
기업현장교사 지도 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 사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상업고등학교	010-0000-0000	김OO	
기업담당자	OO기업	010-0000-0000	박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 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경영·금융	재학생 현황	OO명
졸업 후 주요 진출 분야	회계 및 경리사무원, 회계사, 은행출납사무원		
관련 교과목	회계·사무행정	관련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관리(0202030202_22v3) • 사무행정 업무 관리(0202030207_22v4) • 사무환경 조성(0202030208_22v4) •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0202030209_22v2) • 원가계산(0203020103_20v4) • 회계정보시스템 운용(0203020105_20v4)
현장실습 필요직무 (NCS 능력 단위)	문서작성, 자료관리, 전표관리, 자금관리, 결산처리		

기업 분석			
기업명	OO기업	대표자	이OO
재직자 수	OO명	연매출액	OO원
주요 업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행직무	사무행정, 회계·감사
현장실습 활용 주요 시설 및 기자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시밀리,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스프레드시트/자료 베이스 프로그램, 통계 분석 패키지 프로그램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운영 4년 동안 지속 • 각종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사무 행정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기업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학습한 학생을 희망함.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 능력 단위 및 기업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능력 단위: 문서작성, 문서관리, 자료관리, 회의 운영, 사무 행정 업무 관리, 사무환경 조성,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그룹웨어 활용, 경영 정보 시각화, 전표 관리, 자금관리, 원가계산, 결산 처리, 회계정보시스템 운용, 회계감사, 사업결합 회계, 비영리회계, 원가관리, 재무제표작성, • 기업특화: ERP 그룹 웨어 활용, ERP 프로그램 업무 접수 및 안내, ERP 프로그램 내·외부 처리 절차 이해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고, 전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처리하고,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며, 결산 예비 절차와 각 계정을 정리하고 장부를 마감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기업 현장 견학 • 실습 일정 안내 • 조직 적응력 및 직무기본역량 •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강의 / 견학	3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12	
NCS 능력단위	• 문서작성(0202030201_22v3)	강의/실습	6	20
	• 자료관리(0202030203_22v4)	강의/실습	4	15
	• 전표관리(0203020101_20v4)	강의/실습	6	20
	• 자금관리(0203020102_20v4)	강의/실습	4	15
	• 결산처리(0203020104_23v5)	강의/실습	5	15
기업 특화교육	• ERP 그룹웨어 활용	강의/실습	5	10
평가	• 과제수행(태도, 안전관리 포함) 과정 결과 평가	수행평가 평가자 질문	수행평가	
교육 시간 합계			45	95
총 현장실습 시간			140	

*NCS 능력 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 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표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OO고등학교 OO과 0반 00번					이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항에 ○표 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100	
현장실습 과제수행	문서작성, 자료관리	10	9	8	7	6	/40		
	전표관리	10	9	8	7	6			
	자금관리, 결산처리	10	9	8	7	6			
	ERP 그룹웨어 활용	10	9	8	7	6			
태도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30		
	협동심	10	9	8	7	6			
	사규 및 직장예절 준수	10	9	8	7	6			
안전관리	안전관리 숙지	10	9	8	7	6	/30		
	안전수칙 이행	10	9	8	7	6			
	장비 및 기구 정돈	10	9	8	7	6			
평가준거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100	
	*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								
기간	2000 . . . ~ 2000 . . .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OO고등학교장 귀하

자료 농업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2개월 예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기업명		OO기업		
소재지	본사	경기도 화성시 OO로		
	실습장	□□시 □□구 □□□□로 1234		
기업현장교사(직위)		확정 후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에 입력함.		
현장실습 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40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없음		
직무 분야		농림어업(24)		
실습직무 및 주제		채소 재배, 시설 원예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 품목별 재배 계획에 따라 재배시설 설치 및 관리, 수경재배 준비 및 관리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채소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시설을 통해 재배하는 원예작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내 생육환경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다.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19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 재배시설 설치(2401010316_16v3) 채소 재배시설 관리(2401010317_22v4) 채소 수경재배 준비(2401010318_16v3) 시설원에 시설설치(2401010803_17v1) 시설원에 시설관리(2401010804_23v2) 시설원에 복합환경관리(2401010805_17v1) 시설원에 수경재배관리(2401010806_17v1) 	49	161
	기업특화교육	스마트팜 장비 운영 및 정비	16	35
	평가	실습 항목별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수시	
	총시간	280		
기업현장교사 지도 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 사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고등학교	010-0000-0000	장OO	
기업 담당자	OO기업	010-0000-0000	김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 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 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농수산학	재학생 현황	OO명
졸업 후 주요 진출 분야	농림어업직 > 작물재배 종사자		
관련 교과목	시설원예	관련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재배관리(2401010314_22v4) 채소 재배시설 설치(2401010316_16v3) 채소 재배시설 관리(2401010317_22v4) 채소 수경재배 준비(2401010318_16v3) 채소 수경재배 관리(2401010319_16v3) 채소 병해 관리(2401010320_22v4) 채소 충해 관리(2401010321_16v3) 시설원예 시설설치(2401010803_17v1) 시설원예 시설관리(2401010804_23v2) 시설원예 복합환경관리(2401010805_17v1) 시설원예 수경재배관리(2401010806_17v1) 시설원예 병해충관리(2401010807_23v2) 시설원예 생리장해관리(2401010808_17v1)
현장실습 필요 직무 (NCS 능력 단위)	채소 재배시설 설치, 채소 재배시설 관리, 채소 수경재배 준비, 시설원예 시설설치, 시설원예 시설관리, 시설원예 복합환경관리, 시설원예 수경재배관리		

기업 분석			
기업명	OO기업	대표자	이OO
재직자 수	OO명	연매출액	OO원
주요 업종	채소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수행 직무	채소 재배, 시설 원예
현장실습 활용 주요 시설 및 기자재	온실, 수경재배 시스템, 온실 환경 제어 프로그램, 펌프, 여과기, 각종 양액 살균기, 전자밸브, 양액 혼합기, pH 측정기, EC 측정기, 환경 계측기, 기포 발생기, 베드가온 및 냉각기, 기타 수경재배 장치, 토양 함수율/염류농도 측정기, 복합환경관리 시스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운영 경험 2회 작물 재배 중 채소 재배를 중점적으로 현장 실습할 수 있어, 채소 재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 능력 단위 및 기업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능력 단위: 채소재배포장관리, 채소생리장해관리, 채소수확관리, 채소재배장비자재관리, 채소육묘준비, 채소 정식 포장관리, 채소포장제초퇴비사용, 채소 재배시설 설치, 채소 재배시설 관리, 채소 수경재배 준비, 채소 수경재배 관리, 시설원에 시설설치, 시설원에 시설관리, 시설원에 복합환경관리, 시설원에 수경재배관리, 시설원에 병해충관리 • 기업특화: 스마트팜 장비 운영 및 정비
---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 품목별 재배 계획에 따라 재배시설 설치 및 관리, 수경재배 준비 및 관리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채소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 시설을 통해 재배하는 원예작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내 생육 환경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기업 현장 견학, 실습 일정 안내 • 조직 적응력 및 직무기본역량 •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강의 / 견학	7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의	12	
NCS 능력단위	• 채소 재배시설 설치(2401010316_16v3)	강의/실습	7	23
	• 채소 재배시설 관리(2401010317_22v4)	강의/실습	7	23
	• 채소 수경재배 준비(2401010318_16v3)	강의/실습	7	23
	• 시설원에 시설설치(2401010803_17v1)	강의/실습	7	23
	• 시설원에 시설관리(2401010804_23v2)	강의/실습	7	23
	• 시설원에 복합환경관리(2401010805_17v1)	강의/실습	7	23
	• 시설원에 수경재배관리(2401010806_17v1)	강의/실습	7	23
기업특화 교육	• 스마트팜 장비 운영 및 정비	강의/실습	16	35
평가	• 과제수행(태도, 안전관리 포함) 과정 결과 평가	체크리스트 작업장 평가 평가자 질문	수시	
교육 시간 합계			84	196
총 현장실습 시간			280	

*NCS 능력 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표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00고등학교 00과 0반 00번					이름							
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현장실습 과제수행	채소 재배시설 설치 및 관리 채소 수경재배 준비	10	9	8	7	6	/40	* 평가항목의 배점함에 ○표 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100					
	시설 원예시설 설치 및 관리	10	9	8	7	6							
	시설원예 복합환경관리 시설원예 수경재배관리	10	9	8	7	6							
	스마트팜 장비 운영 및 정비	10	9	8	7	6							
태도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30						
	협동심	10	9	8	7	6							
	사규 및 직장 예절 준수	10	9	8	7	6							
안전관리	안전관리 숙지	10	9	8	7	6	/30						
	안전수칙 이행	10	9	8	7	6							
	장비 및 기구 정돈	10	9	8	7	6							
평가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100				
<p>*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p>													
기간	2000 . . . ~ 2000 . . .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00고등학교장 귀하

자료 가사계열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 (3개월 예시)

구분		내용		
기업명		○○베이커리		
소재지	본사	경기도 화성시 ○○로		
	실습장	□□시 □□구 □□□□로 1234		
기업현장교사(직위)		*확정 후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에 입력함.		
현장실습 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60일)		
현장실습 제외일/기간(사유)		3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자필고사)		
직무 분야		식품가공(21)		
실습직무 및 주제		제과, 제빵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과자류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과자류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빵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빵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장실습 시간 편성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16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112_18v2) 과자류제품 재료혼합(2102010102_18v4) 과자류제품 반죽정형(2102010103_18v4) 과자류제품 반죽익힘(2102010104_18v4) 과자류제품 포장(2102010105_23v4)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213_18v2) 빵류제품 반죽발효(2102010203_18v4) 빵류제품 반죽정형(2102010204_18v4) 빵류제품 반죽익힘(2102010205_18v3) 빵류제품 마무리(2102010206_18v3) 	100	260
	기업특화교육	기업 특화 제품 생산	10	34
	평가	실습 항목별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수시	
	총시간	420		
기업현장교사 지도 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전담, <input type="checkbox"/> 비전담 1:n	비전담 지도 사유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

구분	소속	연락처	성명	서명
학교 담당 교사	OO고등학교	010-0000-0000	장OO	
기업담당자	OO베이커리	010-0000-0000	최OO	

※ 프로그램 개발비는 학교 담당 교사 1명과 기업담당자 1명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요구 분석

학교 분석				
학과(전공)	제과·제빵	재학생 현황	OO명	
졸업 후 주요 진출분야	제과·제빵원			
관련 교과목	제과제빵 이론, 식품학, 위생학, 제빵 실습, 제과 실습, 데커레이션 실습 등	관련 NCS 능력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112_18v2) 과자류제품 재료혼합(2102010102_18v4) 과자류제품 반죽정형(2102010103_18v4) 과자류제품 반죽익힘(2102010104_18v4) 과자류제품 포장(2102010105_23v4)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213_18v2) 빵류제품 반죽발효(2102010203_18v4) 빵류제품 반죽정형(2102010204_18v4) 빵류제품 반죽익힘(2102010205_18v3) 빵류제품 마무리(2102010206_18v3) 	
현장실습 필요직무 (NCS 능력 단위)	과자류제품 생산작업 준비, 과자류제품 재료 혼합, 과자류제품 반죽 정형,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과자류제품 포장,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 빵류제품 반죽발효, 빵류제품 반죽정형, 빵류제품 반죽익힘, 빵류제품 마무리			

기업 분석			
기업명	OO베이커리	대표자	강OO
재직자 수	OO명	연매출액	OO원
주요 업종	식품가공	수행 직무	제과, 제빵
현장실습 활용 주요 시설 및 기자재	가열 기구, 냉장고, 냉동고, 작업대, 온도계, 각종 제과 도구, 저울, 산도(pH) 측정기, 수분 측정기, 당도계, 염도계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첫 운영 제과와 제빵을 둘 다 실습할 수 있어 두 직무에 모두 관심 있는 학생을 희망함. 		
현장실습 가능 직무* (NCS 능력 단위 및 기업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NCS 능력 단위: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 과자류제품 재료혼합, 과자류제품 반죽정형, 과자류제품 반죽익힘, 과자류제품 포장,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 빵류제품 반죽발효, 빵류제품 반죽정형, 빵류제품 반죽익힘, 빵류제품 마무리 기업특화: 기업 특화 제품 생산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평가 계획

현장실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과자류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과자류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빵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빵을 생산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영역(능력 단위)	방법	입문교육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업무 개요 소개 • 실습기업 현장 견학 • 실습 일정 안내 • 조직적응력 및 직무기본역량 • 근로기준법(권익보호) 교육 	강의 / 견학	4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의	12	
NCS 능력단위	• 과자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112_18v2)	강의/실습	8	20
	• 과자류제품 재료혼합(2102010102_18v4)	강의/실습	12	30
	• 과자류제품 반죽정형(2102010103_18v4)	강의/실습	12	35
	• 과자류제품 반죽익힘(2102010104_18v4)	강의/실습	10	25
	• 과자류제품 포장(2102010105_23v4)	강의/실습	8	20
	• 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2102010213_18v2)	강의/실습	8	20
	• 빵류제품 반죽발효(2102010203_18v4)	강의/실습	10	25
	• 빵류제품 반죽정형(2102010204_18v4)	강의/실습	12	35
	• 빵류제품 반죽익힘(2102010205_18v3)	강의/실습	10	25
	• 빵류제품 마무리(2102010206_18v3)	강의/실습	10	25
기업특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특화 제품 생산 	강의/실습	10	34
평가	• 과제수행(태도, 안전관리 포함) 과정결과 평가	포트폴리오 작업장 평가	수시	
교육 시간 합계			126	294
총 현장실습 시간			420	

*NCS 능력 단위 혹은 기업특화 직무 능력

※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단, 의무교육 12시간 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현장실습 시작과 함께 실시하여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 직무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생은 1:1 지도를 원칙으로 함.

제5장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기업, 학생은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현장실습 협약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고시 제2018-165호)」 서식2를 활용함.
- 기업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함.
 - 현장실습 시간, 휴일 및 야간 근로의 금지,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 적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확인함.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이내로 운영하되, 학교, 기업, 학생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함.
 - ※ 실습시간 연장에 대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상에 서면으로 처리(구두 합의 불인정)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하며, 현장실습 기업은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함.

제6장

현장실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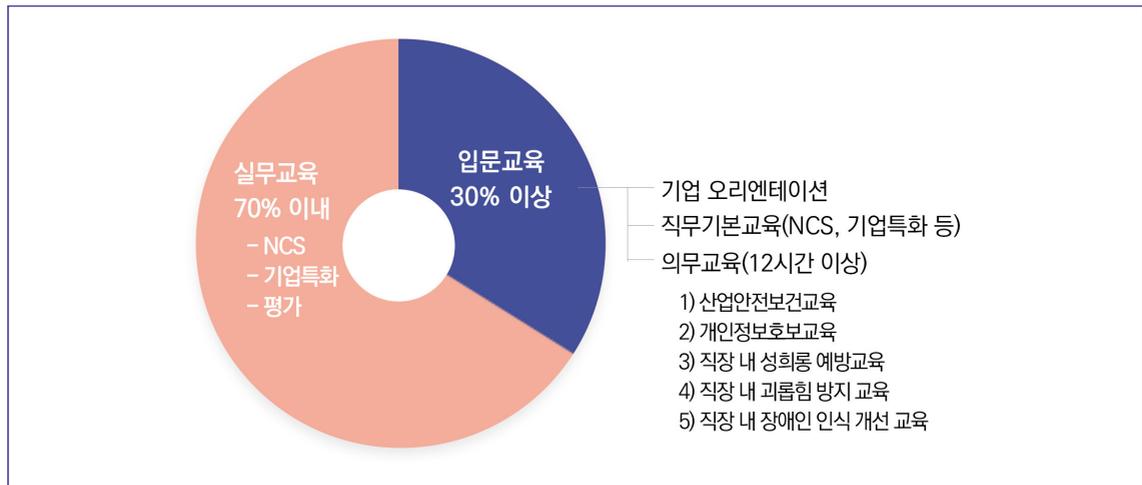
가. 현장실습생 기업 도착 및 입문교육 실시

-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안전 장비, 도구, 재료 등을 제공해야 함.
-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 현장실습 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함.
 -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참고
- 기업은 **실무교육 전에**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의무교육 시행 여부를 학교에 알려야 함.
- 기업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교육을 시행해야 함.

[현장실습생을 위한 필수 안전 교육]

입문교육시간	입문교육내용
전체 현장실습 시간의 최소 30% 이상을 입문교육 시간으로 확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문교육(기업체에서 실시) 시간 • 실습업체 업무소개, 직무기본교육(NCS, 기업특화 등) • 의무 교육(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12시간 이상

[현장실습생 대상 실무교육과 입문교육 내용 및 시간]



나.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모니터링

- 기업은 매월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서식 5**를 작성하여 학교로 전송하여야 함.
- 기업은 학교의 순회지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다. 기업코칭

- 노무사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장실습생 안전 및 권익보호 조치 실행 등 코칭을 시행함.
- 학교는 기업코칭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기업에 안내하고, 노무사는 기업과 기업코칭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선도기업은 반드시 현장실습 운영 직무별로 기업코칭을 실시해야 함.
 - ※ OO기업이 ①기계, ②사무와 같이 두 개 직무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직무별로 기업코칭을 실시함.
- 유해위험 업종에 한하여 기업코칭 시 산업안전점검을 재실시함.
 - ※ 유해위험 업종: 운전·운송,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수산해운
- 참여기업도 학교전담노무사와 협의하여 기업코칭 실시 가능
- 기업은 노무사의 기업코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라. 현장실습의 변경

- 현장실습을 시작한 이후에 현장실습 협약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 학교, 학생이 대면 또는 서면 합의를 거쳐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서식 4**를 3부 작성함.
- 기업은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에 학생의 날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함.
- 학교에 제출된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는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학교는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 승인 여부에 대해 기업에 통지하고, 승인된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는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HIFIVE)에 등재함.
- 승인된 「현장실습 변경 합의서」는 기업, 학생, 학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함.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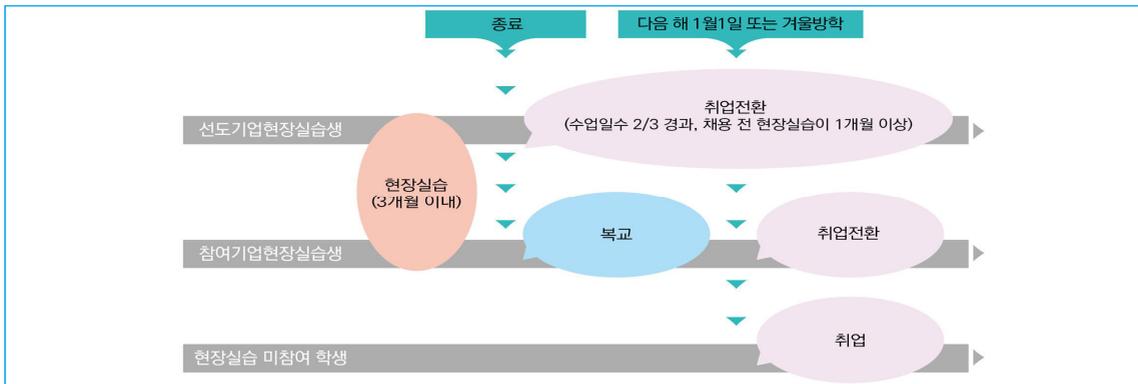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전환

가. 현장실습 종료

-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 평가서 **서식6** 를 작성한 뒤 직인을 찍어 학교에 제출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을 신청함.
 - ※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의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업무처리 기준 참고
-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취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학부모, 학교와 상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기업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출결일지 등 출결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서식5** 참고

나. 취업전환 시기

- (참여기업) 현장실습 참여기업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충족하는 기업에서 5일 이상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3학년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취업 전환 가능함.
- (선도기업) 현장실습 선도기업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를 충족하는 기업 중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4주(실습일 기준 20일)이상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전환 가능함.
 - ※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졸업 가능(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전에 선도기업으로 취업 전환하는 경우 4주(실습일 기준 20일) 이상 현장실습을 참여 후 취업전환(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가능
- 현장실습 미참여 학생도 참여기업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취업 가능함.





III

현장실습 수당 및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1. 현장실습 수당 지급
2.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3.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제1장

현장실습 수당 지급

- 현장실습생은 산업현장 적응 기회로서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과 연계한 실무교육을 받으므로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실습수당을 받아야 함.
- 현장실습생은 학생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므로, 근로에 따른 급여가 아닌 교육훈련에 대한 수당을 받음.
- 현장실습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 현장실습 수당 이상(최저임금 40% 수준)을 지급해야 함.

※ 2025년 기준 현장실습 수당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최저임금)10,030원×6일×7시간=421,260원(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1주일 수준)

- 421,260원×40%=168,504원(최저임금의 40%)

- 168,504원÷5일÷7시간=4,814원

2025년의 경우는 4,900원임

제2장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현장교사에게 실습지도 수당을 지급함.
- 지원 대상: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 출연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2025년 자격 확인서 신설) 기업현장교사가 한국장학재단에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시 현장실습 기업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상세한 제출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2025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기업현장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실습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관리 및 교육 등의 현장교육을 수행
 - ※ 기업현장교사 1명당 현장실습생 1명을 지도하는 것이 원칙(1:1 배치)
 - ※ 모든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완료해야 함
- 지원 내용: 현장실습생 수에 따라 일 3만 원~3.5만 원의 실습지도 수당을 최대 210만 원 한도로 지급함.
 - ※ 1일, 실습생 1명 30,000원, 2명 이상 35,000원(단 1:1 지도가 원칙임.)
-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별도 안내

참고

기업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기업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현장실습 산업체명		○○○○○ 회사		
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순번	직급	성명	연락처	자격요건* 번호
1				
2				
3				
4				
5				
6				
<p>*<자격요건></p> <p>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p> <p>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p> <p>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p> <p>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p>				

위 사항을 확인함

202 . . .

00 회사 00 대표(직인)

제3장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수당 회계처리 방법

가.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방법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여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진행함.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방법]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보험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보험		
사업장명칭		사무대행기관번호	
사무대행기관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input checked="" type="radio"/> 취득(고용)신고내역 <input checked="" type="radio"/> 부과구분부호 설명			
연번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신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실습생주민번호	성명
	체류자격		실습생 성명
	대표자여부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국적
* 주민번호 입력 후 동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완료하셔야 근로자명 입력이 가능합니다. * 이미고용정보(취득)가 되어 있는 근로자는 신청구분에서 해당보험 체크를 해제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원) : [] 취득일 : [] 직종부호 : [] 1주소정근로시간 : [] 계약종료년월 : [] 계약직여부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보험료부과구분 : 부호 [] 선택 사유 [] 선택			
산재보험 해당내용 입력			
월평균보수(원) : [] 취득일 : [] 직종부호 : [] 1주소정근로시간 : [] 계약종료년월 : [] 보험료부과구분 : 부호 [] 산재만 부과 사유 [] 현장실습생			
국민연금 소득월액(원) : [] 취득일 : [] 취득월 납부여부 : <input type="checkbox"/> 선택 취득부호 : [] 선택 특수직종 : [] 선택 직역연금 부호 : [] 선택			
건강보험 보수월액(원) : [] 취득일 : [] 취득부호 : [] 선택 보험료감면부호 : [] 선택 피부양자신청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피부양자등록 : [] 공무원/교직원 : 회계부호 [] 선택 직종부호 [] 선택			

나.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생 수당 회계처리

-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시,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현장실습 수당을 신고할 수 있음.
- 교육훈련비 지급 시, ①현장실습표준협약서 ②이체내역서(기업에서 학생 계좌로 실습수당을 이체한 내역) 등 2가지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기업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과 현장실습 진행을 위해 소요된 경비를 교육훈련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회계처리 절차
 -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소득구분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차감한 금액(기타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함(20%는 국세, 2%는 지방세).
 - ※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60%를 적용함.
 - 예를 들어, 현장실습 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기타소득은 100만 원, 필요경비는 60만 원(100만 원의 60%),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 (=100만 원-60만 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88,000원(40만 원의 22%)임.
 - 즉, 현장실습 기업에서 실습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1) 88,000원을 원천 징수하고, (2) 나머지 잔액 912,000원을 실습생에게 지급하고, (3) 원천징수세액 88,000원 중 8만 원은 세무서(국세)에, 8천 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에 납부함.
 - 기타소득이 연간 750만 원(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습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지니게 됨.

기타소득 (실습생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100만 원	실습시간*실습수당
필요경비	60만 원	100만 원*60%
기타소득금액	40만 원	(기타소득)-(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	88,000원	(기타소득금액)*22%
실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금액	912,000원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다. 현장실습 수당의 교육훈련비 계정 처리 방법

- 현장실습 기업이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

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함.

-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은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지급한 수당 등의 30%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실습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이 연간 5,000만 원이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1,5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현장실습 기업 입장에서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수당의 30%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5%).
- 현장실습 기업 내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함.

구분	계정과목	적요	금액
(차변)	교육훈련비	(예시) 현장실습생 ○○○ X 월 실습수당	1,000,000
(대변)	보통예금	(예시) 현장실습생 ○○○ X 월 실습수당	1,000,000

- 현장실습 기업이 매년 3월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연구·인력비 지출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하고,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외부조정)을 받는 경우 전문가에게 이러한 연구·인력비 지출 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반영 요청함.
(증빙자료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실습수당 이체내역서)



IV

현장실습생 교육과 관리

1. 현장실습 권익 및 보호 지원
2. 안전사고 조치



제1장

현장실습 권익 및 보호 지원

- 안전보건을 저해할 요인이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는 학교전담 노무사와 협력하여 실습 중단, 복교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함.
- 안전보건 및 권익침해 사안이 중한 경우 교육청을 통하여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조치함.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사유에 따른 조치 방법]

사유	조치 방법
협약 내용과 다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미반영 시 학생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권익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조치 후 근로감독 요청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실습 중단을 요청한 경우	학생 상담 및 기업 협의를 진행한 후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교 여부 결정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기업에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음

위반내용	부과벌칙
실습시간 초과 또는 휴일 미 부여 등에 대한 의도적인 불법 행위	형사처벌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또는 주요 사항 미준수	과태료 부과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조치 순서]

<p>① 위반 내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초과, 휴일·야간 실습 확인 • 현장실습계약 미체결 또는 표준협약서 미사용 • 주요사항 미준수 등 <p>학교</p>	<p>② 복교 및 시정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즉시 실습생 복교 조치, 위반사항을 기업에 통보 및 시정요청 • 학부모 통지, 상급기관에 사안 보고 <p>학교</p>	<p>③ 근로감독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위반사항 통보, 근로감독 요청 • 야간실습, (성)폭력 등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 동시 진행 • 상급 기관에 사안 보고 <p>학교,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p>
<p>④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진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 • 근로감독 회신 결과 등 사안 보고 • 학생 및 학부모 보호·지원 <p>학교,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p>	<p>⑤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결과 벌칙 해당 사업장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p>학교,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p>	<p>⑥ 최종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 경찰수사 결과, 법원 판결 등 최종결과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 • 상급기관에 최종결과 보고 <p>학교, 시·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p>

[현장실습 관련 법령 상 사업주 준수 규정 및 벌칙·과태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 준용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사업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추가 준용사항

1. 일부개정(‘23.3.30.) 사항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 준용됨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2. 일부개정(2023.03.30.) 사항 -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사)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일부개정 사항 포함) 해설〉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본문	제54조(휴게)	현장실습 4시간마다 30분 이상 현장실습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	계속 실습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현장실습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함.	기존
	제65조(사용금지)	18세 미만자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업에서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하지 못함.	기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18세 미만자 갱내 근로 금지	갱내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며,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 등이 높은 장소이므로 18세 미만자 현장실습을 금지함.	기존
	제73조(생리휴가)	여성 현장실습생 청구 시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여성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월 1회 청구하는 경우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함.	기존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현장실습생 자유의사에 반하는 실습 강요 금지	경제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이 폭행, 협박, 감금 등 일체의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추가
	제8조(폭행의 금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써 현장실습생에 대한 폭행 금지	현장실습생의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금지됨.	추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삼자가 현장실습 계약 관계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직업안정법, 파견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 없는 현장실습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영리로 타인의 현장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 관계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추가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현장실습생이 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	현장실습생이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근로시간 중이라도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됨.	추가
제36조(금품청산)	현장실습생의 실습종료 등과 같은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할 의무	현장실습 종료와 같은 현장실습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현장실습 지원금 등)을 청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음.	추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일부개정 사항 포함) 해설〉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본문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현장실습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실습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됨	추가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의 조사 및 기타 조치 의무와 괴롭힘 조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신고를 접수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괴롭힘 사실 확인 전, 후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추가 ※ 학교장 또는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제77조 (기능습득자의 보호)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도제, 양성공, 수습 등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생에게 열악한 실습조건으로 사용하면서 혹사하거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가사 또는 잡무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함.	추가
벌칙	제107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발생 시 위반자 제재	제7조, 제8조, 제9조 위반 시 적용(추가)
	제109조제1항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금지 위반, 갱내근로 실시 및 금품청산 위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시 제재	제65조 및 제72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36조, 제76조의 3 제6항 위반 시 적용(추가)
	제110조제1호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공민권 행사 미보장 시 제재	제54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10조 위반 시 적용(추가)
	제114조제1호 (벌칙)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 미보장 및 기능습득자 보호 위반 시 제재	제73조 위반 시 적용(기존) 제77조 위반 시 적용(추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일부개정 사항 포함) 해설〉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제116조제1항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일정 범위 내 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	제76조의2 위반 시 적용 (추가)
	제116조제2항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의 괴롭힘 조사실시 의무(제2항), 괴롭힘 확인 시 조치 의무(제5항) 및 조사 관여자 등의 비밀유지 의무(제7항) 위반 시 제재	제76조의3 제2항제4항· 제5항제7항 위반 시 적용 (추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정해진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 현장실습 기간·방법 미준수, 담당자 미배치, 수당 미지급, 안전·보건상 조치 등에 대한 사안 발생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벌칙	제26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현장실습 7시간(연장 동의시 8시간) 초과 실습 또는 정해진 시간 (야간실습 등) 외 실습 제재	
과태료	제27조(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 현장실습 기간,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이 변경절차 등 현장실습 협약서 사항 미준수 시 제재	<p>〈과태료 부가 권한 위임〉</p> <p>사·도교육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제1항제1호(현장실습 계약 미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 ■ 제27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현장실습 기간, 방법, 담당자 배치)까지 및 바목(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른 과태료 <p>고용노동부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현장실습 수당) 및 마목(안전·보건상의 조치)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법령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기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 ▶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 및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짐.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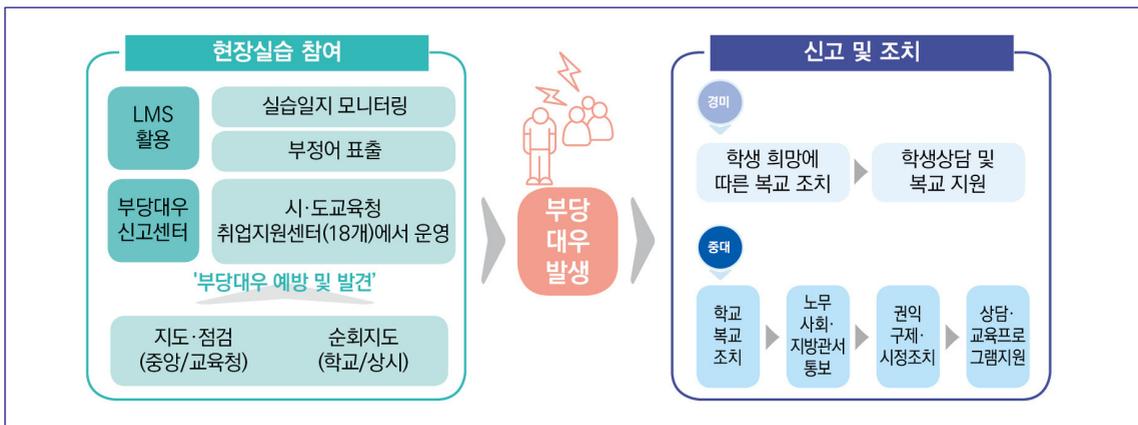
▶ 제26조(벌칙)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7조(과태료)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또는 주요사항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산업안전보건법

▶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함(“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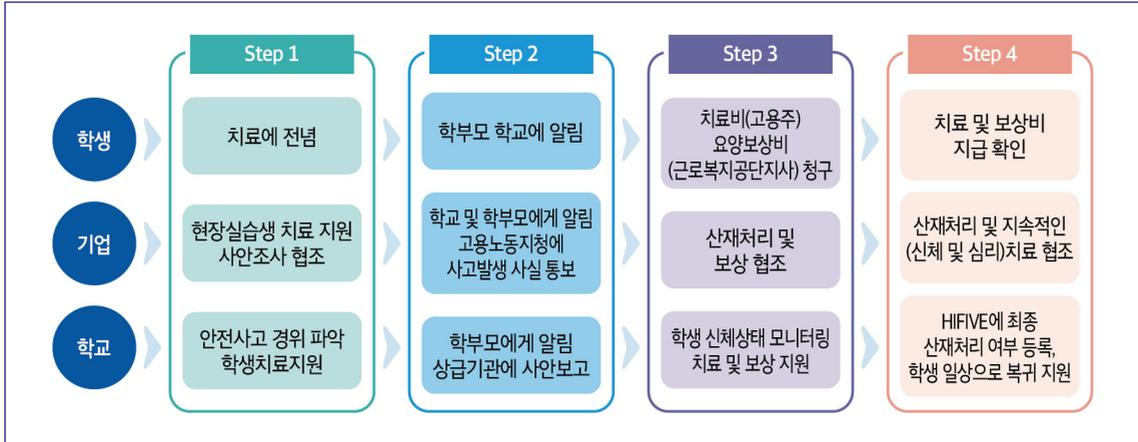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제2장

안전사고 조치

[안전사고 처리 절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실습생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업은 즉시 학부모,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함.
- 학교와 기업은 각각 교육청과 고용노동지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학생의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사안 조사 및 산재 처리에 협조해야 함

※ 전화 등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실습 사안보고서」 서식7 로 상세히 서면보고 해야 함.



부록

[부록 1]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규

[부록 2] Q & A



부록 1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규

법령	세 부 내 용	해 석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20786호, 2025.3.18., 일부개정]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업계고에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함.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18.>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함.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됨.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됨.

법령	세 부 내 용	해 석
	<p>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 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p> <p>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p>	<p>○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p>
<p>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20786호, 2025.3.18., 일부개정]</p>	<p>제9조(현장실습계약 등)</p> <p>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p> <p>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27조(과태료)</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p>○ 현장실습 계약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과태료의 세부기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함.</p>

법령	세 부 내 용	해 석
	<p>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p> <p>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p> <p>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벌칙)</p> <p>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시간을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시간 미준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선 학생보호 조치 후 형사처벌 절차(고발)를 진행하여야 함.
<p>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법률 제20786호, 2025.3.18., 일부개정]</p>	<p>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p> <p>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p> <p>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p>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산업체는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법령	세 부 내 용	해 석
	<p>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p> <p>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p> <p>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p> <p>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p> <p>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개정 2018. 03. 27.></p> <p>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8. 3. 27.>[본조신설 2016. 02. 03.]</p> <p style="text-align: center;">< 동 조항 개정 사항 ></p> <p>※ (2023.03.30. 본회의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3.10월 전면 적용”</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제3항) 제1항에서「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 준용됨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 (제2항, 신설) 제1 항에 따라 준용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div>	<p>○ 학교는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이후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p> <p>○ 현장실습생에게도 ‘18세 미만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갱내근로의 금지’ 등 의무 부과</p> <p>○ (개정) 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근로, 폭행 금지 등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p>
<p style="text-align: center;">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p>	<p>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p> <p>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p> <p>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p> <p>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p> <p>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관계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p>	<p>○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동일하게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명시함.</p>

법령	세 부 내 용	해 석
<p>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법률 제20523호, 2024. 10. 22., 일부개정]</p>	<p>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생이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으로 규정함. ○ 현장실습생이 실제 수령하는 총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기존에는 최저임금에 준하여 징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에 준하여 보상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p>산업안전 보건법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p>	<p>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 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 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생을 산업안전보건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특례조항으로 규정함.
<p>청소년보호법 [법률 제20786호, 2025. 3. 18., 일부개정]</p>	<p>제2조의 5(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 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 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 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 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 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1개항목 이하 생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고용이 불가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현장실습 및 취업에 대한 금지를 조항으로 규정함.

법령	세 부 내 용	해 석
	<p>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p> <p>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p> <p>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p> <p>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p>	
<p>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p>	<p>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p> <p>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6]</p> <p>1. 숙박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며,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한다.</p> <p>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p> <p>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p> <p>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p> <p>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p> <p>마.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가목은 제외한다)</p> <p>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p> <p>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의 경우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규정.</p>

부록 2 Q & A

Q&A

참여·선도기업의 선정 기준

Q 참여·선도기업 선정 기준은 교육청마다 다른가요?

A 참여기업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소)위원회, 선도기업은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에서 선정하며, 기준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과 현장실습생 권익보호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선도기업 승인

Q 정부부처와 지자체 선정 우수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자동 승인되나요?

A 예외 없이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Q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기간은 최대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실습일 기준 60일) 이상 가능합니다.

요구분석

Q 현장실습 요구분석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현장실습 요구분석을 위하여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HIFIVE 홈페이지 → 현장실습 자료실 또는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개발

Q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는 반드시 NCS 능력단위가 편성되어야 하나요?

A NCS 능력단위가 아니더라도 전공적합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특화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실습기간 기준

Q 현장실습 기간 중 1일 실습시간 최소기준이 있나요?

A 학교 수업을 대체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므로, 학교 하루 수업 시간인 7시간 실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실습생은 일 1시간의 연장실습(근무)만 가능하나 반드시 상호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학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연장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1일 7시간 미만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현장실습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별도의 학습을 하거나, 현장실습 종료 후 부족한 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습 수당 산출 방법

Q 기업이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의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저 현장실습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의 40% 수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현장실습 수당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최저임금)10,030원×6일×7시간=421,260원(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1주일 수준)
- 421,260원×40%=168,504원(최저임금의 40%)
- 168,504원÷5일÷7시간=4,814원

2025년의 경우는 4,900원임

Q&A

현장실습 수당 지급 방법

Q 기업이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1일 수당은 [시급 4,900원(2025년 기준) × 1일 실습시간] 으로 계산하며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저 현장실습 수당책정 시 주휴수당을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은 합의에 의해 일 1시간의 연장실습만 가능하므로 일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실습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실습생이 결근 또는 조퇴 시, 기업은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A

현장실습 표준협약 외 근로계약

Q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현장실습 협약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있나요?

국가적 책임하에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춘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사관의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현장실습표준 협약서 미작성 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동시 작성은 불가)

A

추가적으로 채용을 이유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사관 관련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협약서, 시·도교육청 협의체의(선도기업 승인) 심의, 취업전환 시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사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전담 노무사의 협조하에 실사가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운영

Q 기업현장교사는 실습시간 동안 항상 현장실습생과 동행해야 하나요?

현장실습생과 항상 동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동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1인 기업의 현장실습은 불가합니다. 기업현장교사의 출장, 휴가, 외근 등 부재 시 기업 내 다른 기업현장 교사를 지정하여 동행해야 하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상시적 관찰과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가능 해야 합니다. 대체 지정된 기업현장교사의 수당은 현장실습 종료 후 정정을 통하여 실제 담당할 기간만큼 각각 '기업현장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Q&A

Q 기업현장교사는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기업현장교사는 한국장학재단에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시 현장실습 기업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기업 현장교사 자격 확인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사고조치

Q 현장실습생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이후 취업

Q 현장실습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A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부터 현장실습과 무관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선도기업으로 취업 전환을 할 때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부터 가능하며, 취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현장실습을 1개월(실습일 기준 20일)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Q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취업하지 않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A 겨울방학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가능하며, 현장실습 협약 체결, 수당 지급 등 모든 방법과 절차 또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단, 졸업일까지만 가능하며, 현장실습 협약 내용과 관계없이 현장실습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 종료됩니다.

Q&A

Q 취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야간 근무도 가능한가요?

A 학생이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전환한 시점에 만 18세 이상인 학생들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40시간과 야간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취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졸업 할 때까지 학교 및 교육청은 관리감독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 학생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 어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기업의 자회사로 취업 전환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 기업과 취업 전환 기업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본사와 지사, 본점과 지점 관계로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기업과 취업 전환하려는 기업에서의 직무가 동일하고, 취업 전환하려는 기업 또한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취업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은행 중앙회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지점으로 취업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의 취업 전환

Q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도제 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 전환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A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도제 기업에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또는 취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일반 기업에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및 취업전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 됩니다. 도제 기업이 선도기업인 경우 수업일수 2/3 시점, 참여기업의 경우 익년 1월 1일 또는 겨울 방학 이후부터 취업전환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취업 전환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의 경우, 취업 전환 전에 이수해야 하는 4주간 (20일)의 현장실습을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 맞춤반 기업이라고 하여 현장실습과 취업 전환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4주간(20일)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만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산업현장 전문가에 의한 교내 프로그램은 '교내현장실습'으로, 현장실습은 '산업체 채용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Q&A

기타

Q 부서관에 합격하여 부서관 학교에 입교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나요?

A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으로 처리합니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하고, 임관 시점이 자격증 취득 여부 또는 졸업일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 기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공 전환 과정 교육에 대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 인정 여부

Q 전공 전환 과정에 참여 후 전공 전환 과정의 전공으로 선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겨울방학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A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선도기업이라고 해도 겨울방학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채용연계를 전제로 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되, 모집 단계에서 부터 전공이 일치하거나 별도의 직무 적합도 검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부터 선도기업으로 취업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5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_____기관대표(이하 “현장실습기관”이라 한다)와 OO고등학교 _____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OO고등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상호 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0000년 ____월 ____일부터 ~ 0000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이론 등의 교육훈련의 경우 산업현장시설 내·외부의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현장실습방법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현장실습기관”이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 현장실습계획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 목적 및 목표,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현장실습담당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교육훈련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5조제4호에 따른 산업체 현장실습 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사(또는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협의체를 구성하며, 현장실습협의체는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기관”과 직접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매월 1회 이상 “현장실습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현장실습기관의 의무)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할 것
2. 현장실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현장실습과제를 부여할 것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할 것
4.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현장실습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
5.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 결과 드러난 개선 및 변경사항을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6.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7.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제6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의무)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 내용은 “현장실습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출결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
2.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도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현장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제9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 시간은 주 35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에 7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_일은 ____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 2에 따라 1일 7시간 이내, 주당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습 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일 1시간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비동의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_분)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현장실습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현장실습 시간 중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현장실습생 특별보호) ①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현장실습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제72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결석을 인정해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 사항을 조치한다.

제12조(재해보상)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3조(현장실습 수당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기관”은 식비, 교통비, 복지비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 수당을 다음과 같이 매월 ___일에 지급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 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 다음 -

■ 0000년 00월 00일부터 ~ 0000년 00월 00일까지 ()원/시간

② 종식의 제공 여부는 “현장실습기관”의 사규 또는 사업장 관행을 준용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4조(복리후생)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게 통보한다.

제16조(포상)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 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려면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___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다만,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실습중단 방지)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취업)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료증명서) ① “현장실습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 후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현장실습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요청 시 “현장실습생”이 이미 이수한 내용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현장실습생”에게 교부한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00. 00.

(현장실습기관) 기 관 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 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0000 고등학교

교 장 (인)

서식 3 취업(전환) 동의서

취업(전환) 동의서

취업(전환) 학생	_____과 3학년 ____반 ____번 성명: _____
-----------	----------------------------------

□ 취업 (전환) 관련 확인 사항

취업 (전환) 업체명		연락처	
근무장소			
취업(전환)일자	0000. . .		
근무시간		급 여	<input type="checkbox"/> 시급 <input type="checkbox"/> 월급 <input type="checkbox"/> 연봉 원
담당부서		담당업무	

위 본인과 보호자()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종료한 후, 취업(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의 「취업(전환) 관련 확인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00년 월 일

학생: (인)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OO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예시)

()월 현장실습(취업) 학생 출결일지

1. 기본 사항

산업체명		담당자 확인		(인)
------	--	--------	--	-----

2. 출결 상황

연번	학과	반	번호	성명	근태상황(일자 및 결과)
예시	000과	1	10	홍길동	10/11(결근),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1					
2					
3					
4					
5					
6					
7					
8					
9					
10					

※ 근태상황은 매월 초에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팩스 : - 전화 :

※ 근태상황은 학교 출결상황에 반영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태상황 중 병으로 인한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는 질병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예시)

현장실습 평가서

소속	○○고등학교 ○○과 0반 00번					이름			
평가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항에 ○표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 /100	
현장 실습 과제 수행	<i>과자류/빵류제품 생산작업준비</i>	10	9	8	7	6	/40		
	<i>과자류/빵류제품 반죽정형</i>	10	9	8	7	6			
	<i>과자류/빵류제품 반죽익힘</i>	10	9	8	7	6			
	<i>과자류제품 재료혼합 및 포장</i>	10	9	8	7	6			
태도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30		
	협동심	10	9	8	7	6			
	사규 및 직장예절 준수	10	9	8	7	6			
안전 관리	안전관리 숙지	10	9	8	7	6	/30		
	안전수칙 이행	10	9	8	7	6			
	장비 및 기구 정돈	10	9	8	7	6			
평가 준거	- 매우 우수: 평가 항목을 아주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우수: 평가 항목을 잘 수행한/발휘한 수준 - 보통: 평가 항목을 보통 수준으로 수행한/발휘한 수준 - 미흡: 평가 항목을 약간 수행한/발휘한 수준 - 매우 미흡: 평가 항목을 전혀 수행하지/발휘하지 않은 수준								
출결	결근 일수	일					/100	총점:()/100	
	* 1일 결근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총평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자 직위: 성명: (인)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현장실습 사안보고서

현장실습 사안보고서(□최초보고 □최종보고)

학교	()고등학교 (☎ 000 - 0000 - 0000)	
학생	()과 ()학년 ()반 ()번 성명()	
기업체	기업명(업종)	○○산업(○○○○업), 선도기업 지정(00.00.00.)
	주소(전화)	○○광역시 (☎ 000 - 0000 - 0000)
	실습 기간	20○○.00.00. ~ 20○○.00.00.(취업 전환 0000.00.00.~)

사안 명	○○로 인한 ○○ ○○○○ 사고		
발생일시	20○○.00.00.() 00시 00분	장소	○○조립 라인
<p>〈사고 경위〉 사안 발생의 동기, 경과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습장 내의 구체적 상황, 목격자, 최초 조치 사항 등 2. 3. 			
<p>〈상황 발생 후 조치내용〉 시간에 따라 구체적·개조식으로 작성, 근로감독, 산재 등 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0000. 00. 00:00 김00 학생 모친에게 연락, 교육청에 유선 보고 받음 2. 0000. 00. 00:00 00병원에 00학교 취업지원부장 방문하여 학생 상태 파악 3. 0000. 00. 00:00 검사 결과 0주간 입원 치료 필요 			
<p>〈관련 당사자 입장〉 학생, 학부모, 기업체, 학교의 입장 서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 치료 후 경과에 따라 학교 복귀 등 판단 예정 2. 기업 : 학생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울 예정 3. 학부모 : 치료 우선 진행 후 현장실습 지속 여부 판단 예정 4. 학교 : 학생 치료에 최우선 지원, 학생 학부모 방문 및 위로 진행 			
<p>〈최종 결과〉 ※ 최종 보고 시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회복 여부: 2. 복교 여부: 3. 산재처리 여부: 			
보고일자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보고자(직·성명)	(직급) ○○○

서식 8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체험형 연계교육형 채용형)

현장실습 기관 일반 현황

기업명(기관명)		해당 여부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소재지	본사		
	실습장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수	
기업(기관) 담당자명		연락처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

현장실습 NCS 직무분야 (현장실습 과정명)			
대상자명		대상자 수	명
현장실습 기간 연장	변경 전	2000. 00. 00. ~ 2000. 00. 00.(60일)	
	변경 후	2000. 00. 00. ~ 2000. 00. 00.(00일)	
	연장 사유		

신청학교 관련 사항

신청학교명		연락처	사무실	
담당자명			휴대폰	
비고 (요청사항, 참고사항 등)				

위와 같이 2000. 학년도 현장실습 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2000. 00. 00.

○○ 고등학교장 (직인)

부칙

1. 이 매뉴얼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2. 이후 매뉴얼 개정 전까지는 이 매뉴얼을 적용합니다.

2025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기업용)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함께
지은이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
송무형(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강석기(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김정기(충주상업고등학교),
장영애(세종장영실고등학교), 고갑석(한국공인노무사회), 고미화(경북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전은경(경기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 김수린(전남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발행처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2025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

기업용